

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1262호 2022. 5. 20.(금)

**【고 시】**

- 옥천군 고시 제2022-34호 용방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.....1
- 옥천군 고시 제2022-36호 장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고시 ....3

**【공 고】**

- 옥천군 공고 제2022-742호 월전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(변경) 공고 ..5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# 용방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

옥천군 고시 제2020-37호(2020.03.20.)로 승인 고시 된 용방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### □ 용방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

1. 사업명 : 용방지구 배수개선사업
2. 위치 :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일원
3.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비고
승인 고시	농업생산 기반시설	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	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972번지 외 6필지	4,072	

4. 총사업비 : 3,200백만원(국비500/지방비2,700)
5. 사업기간 : 2020. 5. ~ 2022. 12.
6. 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

### □ 지형도면 고시 등

-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 및 옥천군 홈페이지(<http://www.oc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 (관련도서 게재 생략)
-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 비치 (☎043-730-255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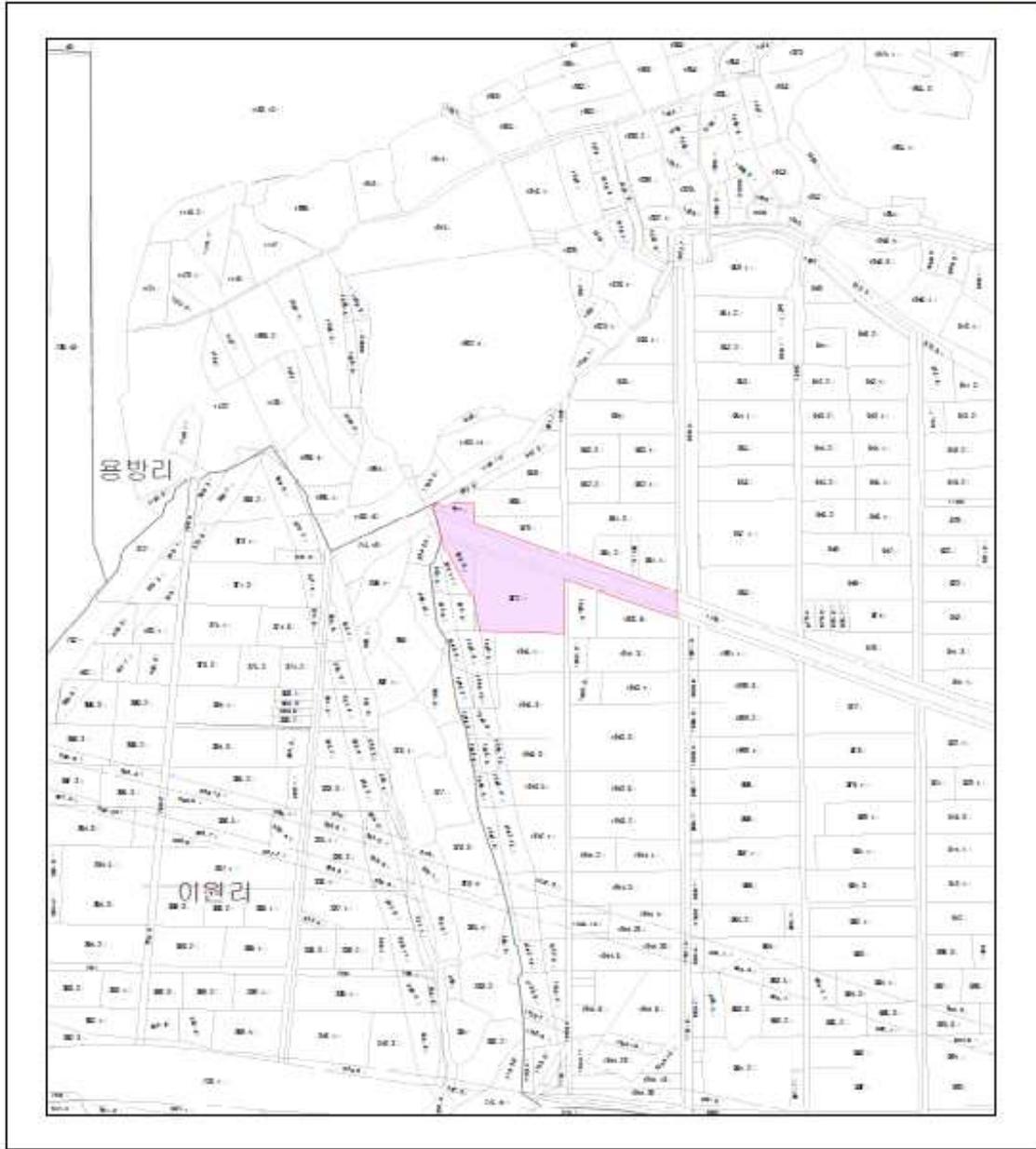
2022년 5월 20일

옥 천 군 수

# 용방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

-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-

도면번호: 1



범례				INDEX	
구분	명칭	지정권자		1	
—	면속지역도	지정일자		<p>축척: 1/1500</p>	
■	배수개선사업시공	고시번호	년 월 일		
		작성년도			
		작성자	한국토목공사 충북지역본부		
		확인자			
		작성년월일	년 월 일		
		지적권 소유			
		일 발행자			

##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고시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(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 등)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.

2022년 5월 20일

# 옥 천 군 수

### 1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범위 등

구분	지구명	위치	지정내용			지정 사유	비고
			유형	등급	현황		
당초	장계지구	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산90-1번지 일원	붕괴 위험	D	A=19,467㎡	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	
변경	장계지구	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산90-1번지 일원	붕괴 위험	D (C+D)	A=31,850㎡	붕괴위험지역 면적 변경에 의한 변경 지정	

-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: 옥천군(안전건설과, 문화관광과)
-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(변경)지정일자: 2022. 5. 18.
-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(『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』 제10조 제1항)
  -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(管路)의 설치,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
  -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
  - 옹벽·축대 및 측구(側溝) 등을 변경하는 행위
  -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  -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단, 인·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: 붕괴위험지역 중장기 계획에 반영 보수·보강 추진

지구명	사업시기	사업비 (백만원)	사업내용	비고
장계지구	2021년~2023년	5,000	토지매입 10필지(23,119㎡), 낙석방지망 설치 및 와이어로프 설치 1식, 뜯돌제거 및 벌목 1식	

6. 관련근거

-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7. 문의: 옥천군청 안전건설과, 문화관광과

- 우편: (우)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(옥천군청 안전건설과, 문화관광과)
- 전화: 043) 730-3524(안전건설과), 043) 730-3724(문화관광과)
- 팩스: 043) 731-3244(안전건설과), 043) 731-1986(문화관광과)

옥천군 공고 제2022 - 742호

## 월전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(변경) 공고

옥천군에서 시행하는 “월전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”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) 및 제21조(협의 및 의견청취 등)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(변경)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보상계획에 대한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5월 20일

옥 천 군 수

### 1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

가. 성 명: 옥천군수

나. 주 소: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, 안전건설과

### 2. 사업의 종류 및 개요

가. 종 류: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

나. 사 업 명: 월전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
다. 사 업 량: 접속도로정비 L=1.0km, 교량 2개소 등

라. 사업기간: 2021. ~ 2024. 6.

### 3. 사업예정지: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, 옥천읍 서정리, 삼양리 일원

### 4. 열람기간 및 장소

가. 열람기간: 2022. 5. 23. ~ 2022. 6. 7.(09:00 ~ 18:00)

나. 열람장소: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재해예방팀

다. 관련도서: 열람장소에 비치

라. 의견제출: 열람기간 내 의견서 작성 제출(우편, FAX, 방문제출 등)

(FAX: 043-731-3244)

## 5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보상금액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라 3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,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 지급합니다.

※ 시·도시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, 시·도시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는 2인 선정

나.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/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.

(붙임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 참조)

다. 보상절차: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⇒ 감정평가 ⇒ 보상액 산정 ⇒ 보상협의 (계약체결) ⇒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(협의 불성립 시 → 수용체결)

## 6. 기타사항

가. 보상금 지급 시기는 2022년 6월이후부터 추진예정이며,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어 감정평가 이후 절차 및 구비서류를 개별 통지합니다.

나.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,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다.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,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.

라.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,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마.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,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, 공사시행 과정에 추가로 발생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합니다.

바. 주소 및 소유권 변동과 가압류, 근저당권 설정 등 실제사항과 상이한 내용은 사전확인 및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재해예방팀(☎043-730-3522, 352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1]

## 의견제출서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제목 월전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	
	당사자	성명(명칭) 주소  (전화번호: )
	의견	
	기타	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**옥천군수** 귀하

### 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2]

## 이 의 신 청 서

사업명	월전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신청인	성명 또는 명칭
	주소
사업 시행자	성명 또는 명칭: 옥천군수
	주소: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안전건설과

이의신청 대상 토지 및 물건

이의신청의 요지

이의신청의 이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옥 천 군 수 귀하

[붙임3]

### 감정평가법인 추천서

○ 추천업체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감정평가법인

○ 추천 일: 2022.   .   .

연번	토지소재지	편입지번	편입 면적 (㎡)	소 유 자		인장 날인	전화번호	비고
				주 소	성 명			

※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,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.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